

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본 지침은 포스코홀딩스 주식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본 지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되며,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공정거래 관련 법규”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,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시행령, 고시, 지침을 말한다.
- ② “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)”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교육,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 시스템을 말한다(이하 “CP”라 한다.)
- ③ “준법지원인”이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,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법 제 542 조의 13 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.
- ④ “자율준수관리자”란 회사 임원급 중 CP 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전반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 (ESG 위원회)에 의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.
- ⑤ “CP 주관부서”라 함은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인 기업윤리팀(공정거래 파트)을 말한다.
- ⑥ “담당부문”이란 법 위반 리스크 관련 자체 점검을 실시·감독하는 팀단위 소속부서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⑦ “자율준수협의회”란 담당부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의 자체 점검을 실시, 감독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와 현업부서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.

제 2 장 조직 및 책임과 권한

제 1 절 대표이사

제 4 조 (최고경영자의 의무와 지원)

- ①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야하며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주관부서가 직무수행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.
- ③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실을 보고받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과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.
- ④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자율준수 문화 저해행위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한다.

제 2 절 임직원

제 5 조 (임직원의 의무)

-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율준수편람,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공정거래

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CP 주관부서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사전 업무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③ 모든 임직원은 소관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즉시 CP 주관부서에 알리고 후속 준법가이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- ④ 모든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주관부서가 자율준수 업무수행에 있어 자료나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.

제 3 절 자율준수관리자

제 6 조 (자율준수관리자 임명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(ESG 위원회)에서 임원급을 선임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준법경영 관련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역할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.
-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CP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또는 이사회(ESG 위원회) 의결로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.

제 7 조 (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등 직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자료나 정보 제출 요구 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상황 발생 시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검토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)

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- 1. CP 기획, 운영 및 감독
- 2. CP 계획수립·평가·개선 및 운영현황에 대한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(ESG 위원회) 보고(반기 1 회)
- 3. CP 운영을 위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및 자율준수편람 체계 승인
- 4. CP 운영실태에 관한 점검 및 위험성 평가, 제도개선안 마련 등 후속조치 결정
- 5. CP 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임직원 제재 및 인센티브 기준 승인
- 6.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체계 결정
- 7. 기타 CP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

제 9 조 (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)

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

- 1. CP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
- 2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및 시정 요구권
- 3. 자율준수업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권
- 4. 기타 CP 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

제 4 절 CP 주관부서

제 10 조 (CP 조직의 구성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CP 주관부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.
- ② CP 주관부서 구성원은 입사 3년 이상의 직원으로 CP 점검, 교육, 위험성 평가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, 지식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CP 주관부서 구성원으로 보임할 수 없다.

1.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2. 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
3. 기타 자율준수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자율준수관리자가 인정한 자
- ④ CP 주관부서의 구성원의 보직 및 전보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요청에 의한다.
- ⑤ CP 주관부서의 구성원은 법규 위반 또는 직무의 불성실 수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
제 11 조 (CP 주관부서의 역할)

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업무 보좌
2. CP 실행에 필요한 계획 수립,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보고
3. CP의 운영 및 시행, 관련 제도개선
4.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법률자문 등 법무 지원활동
5.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 및 동향 파악, 전파활동
6.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활동
7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점검, 위험성 평가 운영활동
8. CP의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운영 및 제도 개선활동
9. 공정거래위원회 대관 기타 CP 운영을 위한 실무 업무

제 5 절 자율준수협의회

제 12 조 (자율준수협의회의 구성 및 선임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CP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현업부서 부서장과 실무자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, 공정거래 관련 현업부서 부서장이 위원을 맡는다.
- ③ 공정거래 관련 현업부서 부서장 산하 근무 직원을 공정거래 실천리더로 선임하여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을 보좌한다.
- ④ CP 주관부서장 또는 직책자는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 실무 운영을 총괄한다.
- ⑤ 회사의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은 자율준수관리자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제 13 조 (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)

-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정기적으로(연 1회 이상) 회의를 개최하고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.
 1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,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안의 심의
 2. 자율준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 간 업무 조정
 3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및 감독
 4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CP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논의

제 14 조 (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및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역할)

- 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공정거래 실천리더 지휘, 감독을 통한 소속부문 CP의 운영 및 총괄
 2. 담당부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위험성 및 CP 운영 개선사항 발굴
 3. 담당부문의 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및 감독결과의 자율준수관리자 보고
- ②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보좌
 2. 담당부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상담 및 자문 의뢰
 3. 담당부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준법 자가점검 가이드 및 전파활동
 4. 담당부문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CP 주관부서 자율준수 활동 지원

제 3 장 CP 업무절차 및 내용

제 1 절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

제 15 조 (자율준수의지의 대내외 공개표명)

- ①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 확산 및 CP 실천을 위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대내외 선언하여야 한다.
- ②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는 회사의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표되어야 한다.
- ③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의 효율적 공표를 위하여 최고경영자는 CP 문화 촉진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
제 16 조 (CP 운영성과의 정기검토 및 사업목표와 연계)

- ① 최고경영자는 CP 운영현황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- ②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의지의 실천을 위하여 회사의 사업목표에 반영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2 절 CP 의 구체적 운영

제 17 조 (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)

-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실제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편람은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 변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 후 주기적(반기 1 회 이상) 개정하며 개정사항을 모든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편람은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.
- ④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관련 필수 법규, 제재기준, 사례 및 판례, 행동지침, 질의응답, 자가점검 방법 등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편람을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담당부문에 배포하고 활용실적을 주기적으로(반기 1 회 이상) 점검하여 활용 편의성을 지속 개선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교육프로그램의 운영)

-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층별, 업무별 차등화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CP 연간 계획 수립 시 최고경영자 및 임원 대상 교육 참여를 의무사항으로 반영한다.
 1. e-러닝 강의 등을 이용한 on-line 교육
 2. 테마별 off-line 교육
 3. 준법뉴스 레터 및 준법 동향파악 정보 배포
 4. 기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
- ② CP 주관부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영달받아 계획에 따라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.
- ③ CP 주관부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내외 강사의 자격 요건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.
 1. 사외강사: 법무법인, 전문기관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3 년 이상 보유자
 2. 사내강사: CP 주관부서 및 유관부서(구매, 사업관리, 재무, ISO 등) 업무경력 1 년 이상 또는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(CCP) 자격 2 급 이상 또는 ISO 준법경영 심사원 자격 또는 공정거래 관련 학위 보유자
- ④ CP 주관부서는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를 선정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교육 수강현황을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 해당 교육대상으로 선정된 부서 임직원들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⑤ CP 주관부서가 교육대상으로 선정한 부서 임직원 중 교육 미이수자는 보수교육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보수교육 및 특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 명의의 참석 독려 서한을 발송하고 그 내용을 직상급자에게 통지한다. 보수교육 및 특별교육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.
 1. 부서별 공정거래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
 2. CP 주관부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(공시 등 포함)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
 3.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⑥ CP 주관부서는 효과적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 후 피교육자의 이해도, 만족도, VOC, 참석율 등 교육

효과성을 평가하고 연말 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다. 필요한 경우 설문, 증빙, 출석부, 사진 등 교육실적에 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

제 19 조 (CP 위험성 평가 및 점검·모니터링)

- ① CP 주관부서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위험성을 평가하고 적합한 준법통제를 통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 위험성평가는 정기적으(분기 1 회 이상) 실시하고 등급은 상, 중, 하 3 단계로 구분하며 중 등급 이상의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을 구비하여 관련 리스크 경감 및 제거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CP 주관부서는 CP 위험성 경감을 위해 수행한 조치의 적정성 및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CP 위험성 평가기준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위험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, 사내 감사부서와 공동으로 감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CP 위험성 평가 및 점검·모니터링 수행 자격은 CP 주관부서 및 유관부서(구매, 사업관리, 재무, ISO 등) 업무경력 1 년 이상 또는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(CCP) 자격 2 급 이상 또는 ISO 준법경영 심사원 자격 또는 공정거래 관련 학위 보유자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⑤ CP 위험성 평가 및 점검·모니터링 수행 시 CP 주관부서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1. 독립적 입장에서 공정성 준수
 2.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객관적 기준 준수
 3.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기밀에 대한 대외비 유지
 4. 대상부서 및 담당자의 업무 부담 최소화
 5. 대상부서 및 담당자와 충분한 소통과 존중
- ⑥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자에 보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.

제 20 조 (CP 상담센터의 운영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주관부서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인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임직원은 자율점검 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CP 주관부서 내 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여야 한다.
- ③ CP 주관부서 내 상담센터의 상담인은 필요 시 관련 정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구하여 상담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. 상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담 신청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 일 내에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CP 주관부서 내 상담센터의 상담인은 의뢰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⑤ CP 주관부서 내 상담센터의 상담인은 상담결과,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사전 업무 협의제도의 운영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사전 업무협의체(TF)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첨부 1 과 같다.
- ② 공정한 경쟁 기회 제공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의계약 시 사전 감사제도에 따라 주관부서와 사전 업무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현업부서는 이사회(ESG 위원회)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, 공정거래 리스크 여부 등 법규 준수사항을 CP 주관부서와 사전 업무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협력회사와 분쟁 발생 시 상생·협력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사전업무 협의하여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첨부 2 와 같다.
- ⑤ 투자, M&A 등 경영상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부의 전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전 업무 협의하여야 하며 상세기준 및 절차는 주관부서 운영지침에 따른다.

제 22 조 (제보시스템의 운영 및 제보자 보호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보 내용에 대하여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자율준수관리자는 해당 조사결과를 최고경영자, 이사회(ESG 위원회)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제보시스템은 익명 제보가 가능하도록 대내외 다양한 채널로 운영되어야 한다. 제보시스템을 통한 제보 시 회사는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제보자의 신분 누설, 보복 및 색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제보자에게 고용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된다
- ③ 제보시스템 관련 상세 운영기준은 첨부 3 과 같다.
- ④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보시스템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, 수집항목, 이용목적은 제보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제보자가 관련 개인정보 수집의 동의 또는 거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.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수집목적: 공정거래법규 관련 신고내용 확인 및 신고결과의 회신 서비스 제공
 - 2. 수집항목: 작성자, 이메일, 전화번호, 비밀번호
 - 3. 보유 및 이용기간: 정보 주체자의 신고 후 5년

제 23 조 (인사제재 시스템)

-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CP 운영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CP 주관부서나 이를 인지한 부서책임자는 징계 주관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부서 책임자는 위반사실을 CP 주관부서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.
- ② CP 주관부서의 징계요구는 내부감사 지침에 따르며, 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취업규칙 및 상벌지침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. 자율준수관리자는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CP 주관부서는 법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을 감경하거나 반복적 법 위반 등에는 양정을 가중하도록 징계 주관부서에 건의할 수 있으며, 양정 감경 및 가중 운영기준은 첨부 4 와 같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경고조치 할 수 있다.
-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하여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제재조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1. 부당한 공동행위
 - 2. 고의성이 있는 부당지원행위
 - 3.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만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
- ⑤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벌금 등을 부과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보전할 의무가 없다.

제 24 조 (임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)

- ① 준법지원인 또는 자율준수관리자는 CP 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거나 CP 확산에 기여한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해 인사부서에 포상을 추천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.
- ② CP 의 모범적 실천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공정거래 활동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거나 회사의 CP 문화 확립에 공로가 있는 경우로 한다. 이 경우 해당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는 준법지원인 또는 자율준수관리자 명의의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.
 - 1.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또는 소속부서원의 교육 참여실적
 - 2. 자율준수협의회 소속부서에 대한 CP 위험성 평가 이행실적
 - 3.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및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CP 전파활동 실적

제 25 조 (CP 운영의 효과성평가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(반기 1 회 이상) CP 기준, 절차, 운용 등에 대한 점검, 평가 등을 실시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효과성 평가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효과성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나 이사회(ESG 위원회)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체평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CP 등급평가를 받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CP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02.8.1 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05.12.1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06.6.13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07.8.17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1.3.1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4.6.3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7.4.21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8.4.30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0.2.7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0.9.1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1.2.1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1.9.10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2.2.7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2.8.29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3.6.19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3.11.20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4.6.17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4.11.1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5.6.2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5.11.3 부터 개정, 시행한다.
